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18호 2015년 1월 27일(화)

훈 령

- 속초시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 2

공 고

-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3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 초 시 장 (직인)

2015. 1. 27.

속초시 훈령 제 673 호

속초시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규정

속초시 노인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법위반 유발행위의 증가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1)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나. 정의(안 제2조)

- 1) 용어의 정의

다. 감경기준(안 제3조)

- 1) 과징금 감경기준

라. 감경제외대상(안 제4조)

1) 과징금 감경 제외대상에 관한 내용

마. 감경절차 등(안 제5조)

1) 감경 절차에 관한 내용

4. 자치법규안 : 불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
(전화: 033-639-2686,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으로(033-639-2686)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기준) 「청소년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란의 11, 12, 13의 경우 제외)
2.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인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5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 내용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30%	감경제외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	매체물수량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5)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6개월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6개월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인원이 10인미만	출입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출입인원이 20인이상
8. 법 제30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유인인원이 10인미만	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유인인원이 20인이상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유인인원이 10인미만	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유인인원이 20인이상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유인인원이 10인미만	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유인인원이 20인이상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감경율
11.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로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과징금의 50%
12.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로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과징금의 50%
13.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로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의 50%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종		업소명	
	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				
감 경 사 유				
위 반 내 용				
재발 방지 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